

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(대기, 폐수, 소음·진동)

행정처분(폐쇄명령) 공시송달 공고
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6조, 「물환경보전법」 제42조 및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17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명령서(대기, 폐수, 소음·진동 배출시설 폐쇄명령)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, 등기우편물의 반송(이사불명, 수취인불명, 폐문부재 등)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14일

파 주 시 장



1. 제 목: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(대기, 폐수, 소음·진동) 행정처분(폐쇄명령) 공시송달 공고
2. 대 상: 12개 배출시설 사업장(붙임 참조)
3.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: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(대기, 폐수, 소음·진동) 설치허가
(또는 신고) 사업장의 배출시설 멸실 또는 폐업
4. 처분내용: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(대기, 폐수, 소음·진동) 폐쇄
5. 공고기간: 2026. 9. 14. ~ 2026. 9. 28.(14일간)
6. 법적근거
 - 가.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(허가의 취소) 및 같은 법 제85조(청문)
 - 나. 물환경보전법 제42조(허가의 취소) 및 같은 법 제72조(청문)
 - 다. 소음·진동관리법 제17조(허가의 취소 등) 및 같은 법 제51조(청문)
7.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1항에 따라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와는 별도로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8.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 기후위기대응과(031-940-847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위 행정처분 명령서는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 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.